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358

제출일자 : 2005. 9. 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동 조례의 입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(안 제1조).

나.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(안 제2조·제3조).

다. 기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(안 제4조 내지 제15조).

남양주시조례 제 호

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"대표협의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②대표협의체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구성)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"각 협의체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·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·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④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
⑤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, 임명직위원(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)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
제4조(위원명단의 공개) 시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

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통할한다.
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을,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 및 직원)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
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(회의 등)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며,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0조(회의록) ①각 협의체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

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3. 심의사항
4. 심의결과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의결사항의 처리)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"관계인 등"이라 한다)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공청회 등의 개최)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4조(실비지급)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여한 위촉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